

분수

- 소요동력 : 4,500HP
- 총사업비 : 99억원(월드컵사업비로 시행)
- 난지도 앞 희망의 숲과 연계

設置方式

- 부유식 : 부력파이프 바지선 위에 분수대 설치
 - ※ 경주 보문호, 준천 소양강에 100m 규모 부유식 분수대 설치

事業推進計劃

- '99.5~2000.2 : 분수대설계 및 사업자 선정
- 2000.3~10월 : 분수대 설치 및 시험가동
- 2001.3 : 분수대 가동

地下道商街 引受 推進現況

現況 : 총 30개 상가

- 공단관리(10개소) : 을지지하보도, 새서울, 방산, 인현, 소공1·2·3차, 정량리 신당, 을지입구
- 기간만료 후 인계 거부(8개소) : 영등포시장, 충무, 종로5가, 한일, 남대문앞, 명동, 회현, 종로4가, 동대문1차
- 민간관리(12개소) : 강남1·2·3광구, 종로2가, 영등포역, 중오, 잠실역, 강남역, 영등포3가 을지6가, 청계6가, 동대문2차

先行 裁判 宣告 ('99.3.18)

- 사건번호 : 98구3210(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취소)
- 대상상가 : 동대문1차 지하상가
- 담당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 1심 선고결과 : 서울시 승소
- 판단이유
 - 도로점용 연장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며, 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

지 않음

- 20년간의 점용기간은 투자액회수에 부당히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음.
- ※ 동대문1차상가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된만큼, 조만간 다른 지하상가에 대한 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승소판결이 있을 전망

商人들과의 直接契約를 통한 商街引受 推進

-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상인들의 지위불안을 해소하고 관리부채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임점상인들간에 직접 계약을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관리를 개시
- 안전에 문제가 있는 3개 상가를 우선적으로 직접계약 및 관리개시 추진
 - 한 일('99.1.19) : 33개 모든 점포에 대해 계약체결 완료
 - 남대문('99.3. 3) : 현재 계약 접수중이며, 4월까지 계약체결 완료 예정
 - 종로4가('99.3.16) :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99.1부터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왔으나 '99.3.16부터는 상인들과 직접계약 실시

向後對策

- 종전 관리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계속 인계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머지(5개) 미인수상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상인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실시하여 '99년 상반기에 사실상의 인수완료를 추진
- 상가를 인수하는 즉시 노후 시설물을 긴급 점검하고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지하생활환경으로 개선
- 금년에 6개(새서울, 방산, 신당, 남대문앞, 한일, 종로4가) 지하도상가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 및 공기질 향상 도모
- 지하도상가를 권역별로 통합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유도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관리청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사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득이”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관리청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환경저해 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32조”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5)를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원인가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과대상지역 및 정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

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가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③ 원인가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제23조의 제목 “(부과액 조정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부수한다.

제29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납입자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표5의 제목중 “(제20조제1항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한다.